

#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2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
강효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“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·냉장업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냉동·냉장업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 통합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21조의2제4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4항제3호 중 “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”를 “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물류창고업의 등록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·변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1. · 2. (생 략) 3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 보존업 중 식품냉동·냉장업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<u>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</u> 에 따른 냉동·냉장업 ⑤ (생 략)	제21조의2(물류창고업의 등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</u> 에 -----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